「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 국가·지역: 중국
- 법률번호: 주석령 [2017] 제71호
- 제 정 일: 1989년 4월 4일
- 개 정 일: 2017년 6월 27일
- 공 포 일: 2017년 6월 27일
- 시 행 일: 2017년 7월 1일

제1장 총칙
제2장 사건 수리 범위
제3장 관할
제4장 소송참가인
제5장 증거
제6장 제소와 수리
제7장 심리와 판결
제1절 일반규정
제2절 제1심 일반절차
제3절 간이절차
제4절 제2심 절차
제5절 재판감독절차
제8장 집행
제9장 해외행정소송
제10장 부칙

원문	번역문
第一章　总则	제 1 장 총칙
第一条 为保证人民法院公正、及时审理行政案件，解决行政争议，保护公民、法人和其他组织的合法权益，监督行政机关依法行使职权，根据宪法，制定本法。	제 1 조 인민법원이 공정하게 적시에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행정쟁의를 해결하고, 공민과 법인과 그 밖의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행정기관의 법에 따른 직권 행사를 감독하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第二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认为行政机关和行政机关工作人员的行政行为侵犯其合法权益，有权依照本法向人民法院提起诉讼。 前款所称行政行为，包括法律、法规、规章授权的组织作出的行政行为。	제 2 조 공민·법인·그 밖의 조직이 행정기관과 행정기관 근무자의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하였다고 인지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앞 관에서 말하는 행정행위란, 법률·법규·규장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조직이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第三条 人民法院应当保障公民、法人和其他组织的起诉权利，对应当受理的行政案件依法受理。 行政机关及其工作人员不得干	제 3 조 인민법원은 공민·법인·그 밖의 조직의 기소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고, 접수하여야 하는 행정사건은 법에 따라 접수한다. 행정기관 및 직원은 인민법원이

预、阻碍人民法院受理行政案件。 被诉行政机关负责人应当出庭应诉。不能出庭的，应当委托行政机关相应的工作人员出庭。	접수한 행정사건에 대하여 개입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 피소된 행정기관 책임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소에 응하여야 한다. 본인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행정기관에서 상응하는 근무자에게 위탁하여 그가 법정에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第四条 人民法院依法对行政案件独立行使审判权，不受行政机关、社会团体和个人的干涉。 人民法院设行政审判庭，审理行政案件。	**제 4 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행정사건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심판권을 행사하고, 행정기관·사회단체·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인민법원은 행정심판 법정을 설치하고 행정사건을 심리한다.
第五条 人民法院审理行政案件，以事实为根据，以法律为准绳。	**제 5 조** 인민법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법률을 기준으로 행정사건을 심리한다.
第六条 人民法院审理行政案件，对行政行为是否合法进行审查。	**제 6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때에 행정행위가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심사한다.
第七条 人民法院审理行政案件，依法实行合议、回避、公开审判和两审终审制度。	**제 7 조** 인민법원은 합의·회피·공개재판과 2 심 종심 제도를 법에 따라 시행하여 행정사건을 심리한다.

第八条 当事人在行政诉讼中的法律地位平等。	**제 8 조** 행정소송 중인 당사자의 법적 지위는 평등하다.
第九条 各民族公民都有用本民族语言、文字进行行政诉讼的权利。 在少数民族聚居或者多民族共同居住的地区，人民法院应当用当地民族通用的语言、文字进行审理和发布法律文书。 人民法院应当对不通晓当地民族通用的语言、文字的诉讼参与人提供翻译。	**제 9 조** 각 민족 공민은 모두 자기 민족의 언어·문자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소수민족 거주지 또는 다민족 공동거주지역에서 인민법원은 현지 민족이 통용하는 언어·문자로 심리를 진행하고 법률문서를 공포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현지 민족에게 통용되지 아니하는 언어·문자를 쓰는 소송참가인에게 번역을 제공한다.
第十条 当事人在行政诉讼中有权进行辩论。	**제 10 조** 당사자는 행정소송 중 변론할 권리가 있다.
第十一条 人民检察院有权对行政诉讼实行法律监督。	**제 11 조** 인민검찰원은 행정소송 실행에 대하여 법적으로 감독할 권한이 있다.
第二章　受案范围	**제 2 장 사건 수리 범위**
第十二条 人民法院受理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提起的下列诉讼:	**제 12 조** 인민법원은 공민·법인 또는 그 밖의 조직이 제기하는 아래와 같

	은 소송을 수리한다.
(一) 对行政拘留、暂扣或者吊销许可证和执照、责令停产停业、没收违法所得、没收非法财物、罚款、警告等行政处罚不服的;	(1) 행정 구류·허가증 및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생산 운영 중단 명령·위법소득 몰수·불법재물 몰수·벌금 부과·경고 등의 행정처벌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二) 对限制人身自由或者对财产的查封、扣押、冻结等行政强制措施和行政强制执行不服的;	(2) 인신의 자유 또는 재산 차압·압류·동결 등 행정강제조치와 행정강제집행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三) 申请行政许可，行政机关拒绝或者在法定期限内不予答复，或者对行政机关作出的有关行政许可的其他决定不服的;	(3) 행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행정기관이 거부하거나 법정기한 안에 회답을 주지 아니하거나, 행정기관이 관련 행정허가에 대하여 내린 그 밖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四) 对行政机关作出的关于确认土地、矿藏、水流、森林、山岭、草原、荒地、滩涂、海域等自然资源的所有权或者使用权的决定不服的;	(4) 행정기관이 토지·광물·수자원·삼림·산마루·초원·황무지·간석지·해역 등 자연자원에 관하여 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五) 对征收、征用决定及其补偿决定不服的;	(5) 징수·징용 결정 및 그 보상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六) 申请行政机关履行保护人身权、财产权等合法权益的法定职责，行政机关拒绝履行或者不予答复的;	(6) 행정기관이 인신보호권·재산권 등 합법적 권익에 대한 법정 직무와 책임을 이행하도록 신청하였는데 행정기관이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답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七）认为行政机关侵犯其经营自主权或者农村土地承包经营权、农村土地经营权的；	(7) 행정기관이 경영자주권 또는 농촌토지도급경영권·농촌토지경영권을 침해한다고 인지하는 경우
(八）认为行政机关滥用行政权力排除或者限制竞争的；	(8) 행정기관이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에서 배제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九）认为行政机关违法集资、摊派费用或者违法要求履行其他义务的；	(9) 행정기관이 위법적으로 자금을 모금하거나 비용을 할당하거나 그 밖의 의무 이행을 위법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十）认为行政机关没有依法支付抚恤金、最低生活保障待遇或者社会保险待遇的；	(10) 행정기관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구휼금 지급·최저생활보장대우 또는 사회보장대우를 한다고 인지하는 경우
(十一）认为行政机关不依法履行、未按照约定履行或者违法变更、解除政府特许经营协议、土地房屋征收补偿协议等协议的；	(11) 행정기관이 정부특별허가경영협의·토지가옥징수 보상협의 등을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행하거나 약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행하거나 위법적으로 변경·해제하는 경우
(十二）认为行政机关侵犯其他人身权、财产权等合法权益的。	(12) 행정기관이 그 밖의 인신에 대한 권리·재산권 등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지하는 경우
除前款规定外，人民法院受理法律、法规规定可以提起诉讼的其他行政案件。	앞 관의 규정 외에 인민법원은 법률·법규가 소송제기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는 그 밖의 행정사건을 수리한다.
第十三条	제 13 조
人民法院不受理公民、法人或者	인민법원은 공민·법인 또는 그

其他组织对下列事项提起的诉讼:	밖의 조직이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一) 国防、外交等国家行为; (二) 行政法规、规章或者行政机关制定、发布的具有普遍约束力的决定、命令; (三) 行政机关对行政机关工作人员的奖惩、任免等决定; (四) 法律规定由行政机关最终裁决的行政行为。	(1) 국방 · 외교 등 국가 행위 (2) 행정법규 · 규장 또는 행정기관이 제정 · 공포한 보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결정 · 명령 (3) 행정기관이 행정기관 업무인력의 상벌 · 임면 등에 대하여 한 결정 (4) 법률이 행정기관의 최종 재결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행정행위
第三章　管辖	**제 3 장 관할**
第十四条 基层人民法院管辖第一审行政案件。	**제 14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第十五条 中级人民法院管辖下列第一审行政案件: (一) 对国务院部门或者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所作的行政行为提起诉讼的案件; (二) 海关处理的案件; (三) 本辖区内重大、复杂的案件; (四) 其他法律规定由中级人民法院管辖的案件。	**제 15 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국무원 부서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 (2) 세관이 처리하는 사건 (3) 해당 관할구역 안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4) 그 밖에 법률이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는

	사건
第十六条 高级人民法院管辖本辖区内重大、复杂的第一审行政案件。	**제 16 조** 고급인민법원은 해당 관할구역 안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第十七条 最高人民法院管辖全国范围内重大、复杂的第一审行政案件。	**제 17 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 범위 안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第十八条 行政案件由最初作出行政行为的行政机关所在地人民法院管辖。经复议的案件，也可以由复议机关所在地人民法院管辖。 经最高人民法院批准，高级人民法院可以根据审判工作的实际情况，确定若干人民法院跨行政区域管辖行政案件。	**제 18 조** 행정사건은 최초로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민법원이 담당한다. 재의를 거친 사건은 재의기관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도 있다. 고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 비준을 거쳐 재판업무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행정구역 간 행정사건을 관할하는 약간의 인민법원을 정할 수 있다.
第十九条 对限制人身自由的行政强制措施不服提起的诉讼，由被告所在地或者原告所在地人民法院管辖。	**제 19 조**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 불복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피고 소재지 또는 원고 소재지 인민법원 관할에 따른다.
第二十条 因不动产提起的行政诉讼，由不	**제 20 조** 부동산으로 인하여 제기하는 행

动产所在地人民法院管辖。	정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 관할에 따른다.
第二十一条	**제 21 조**
两个以上人民法院都有管辖权的案件，原告可以选择其中一个人民法院提起诉讼。原告向两个以上有管辖权的人民法院提起诉讼的，由最先立案的人民法院管辖。	둘 이상의 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원고는 그 중 하나의 인민법원을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관할권을 가지는 둘 이상의 인민법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가장 먼저 입안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에 따른다.
第二十二条	**제 22 조**
人民法院发现受理的案件不属于本院管辖的，应当移送有管辖权的人民法院，受移送的人民法院应当受理。受移送的人民法院认为受移送的案件按照规定不属于本院管辖的，应当报请上级人民法院指定管辖，不得再自行移送。	인민법원은 수리한 사건이 본원의 관할이 아님을 발견하게 된 경우 관련 관할 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이송을 받은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송을 받은 인민법원이 이송 받은 사건이 규정에 따라 해당 인민법원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지하는 경우, 상급인민법원에 관할 지정을 요청하여야 하고 자체적으로 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二十三条	**제 23 조**
有管辖权的人民法院由于特殊原因不能行使管辖权的，由上级人民法院指定管辖。	관할권을 가지는 인민법원이 특수한 원인으로 인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상급인민법원에 관할 지정을 요청한다.

人民法院对管辖权发生争议，由争议双方协商解决。协商不成的，报它们的共同上级人民法院指定管辖。	인민법원은 관할권이 발생하는 쟁의에 대하여 쟁의 쌍방이 협상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협상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쌍방 공동의 상급 인민법원에 보고하여 관할을 지정받는다.
第二十四条	**제 24 조**
上级人民法院有权审理下级人民法院管辖的第一审行政案件。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下级人民法院对其管辖的第一审行政案件，认为需要由上级人民法院审理或者指定管辖的，可以报请上级人民法院决定。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에 대하여 상급인민법원의 심리 또는 관할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경우,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상급인민법원이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
第四章　诉讼参加人	**제 4 장 소송참가인**
第二十五条	**제 25 조**
行政行为的相对人以及其他与行政行为有利害关系的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有权提起诉讼。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그 밖에 행정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공민·법인·그 밖의 조직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有权提起诉讼的公民死亡，其近亲属可以提起诉讼。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 공민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有权提起诉讼的法人或者其他组织终止，承受其权利的法人或者其他组织可以提起诉讼。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 법인·그 밖의 조직이 중지하는 경우 그 권리를 승계하는 법인·그 밖의 조직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
人民检察院在履行职责中发现生态环境和资源保护、食品药品安全、国有财产保护、国有土地使用权出让等领域负有监督管理职责的行政机关违法行使职权或者不作为，致使国家利益或者社会公共利益受到侵害的，应当向行政机关提出检察建议，督促其依法履行职责。行政机关不依法履行职责的，人民检察院依法向人民法院提起诉讼。	인민검찰원은 직무 및 책임 이행 중 생태환경과 자원 보호·식품 의약품 안전·국유재산 보호·국유지 사용권 출양 등의 영역에서 감독관리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이 위법적으로 직권을 행사하거나 행사를 하지 아니하여 국가 이익 또는 사회 공공이익이 침해를 받는 경우, 행정기관에 조사를 건의하고 법에 따라 직무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직무를 이행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第二十六条	**제 26 조**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直接向人民法院提起诉讼的，作出行政行为的行政机关是被告。	공민·법인 또는 그 밖의 조직이 직접적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피고이다.
经复议的案件，复议机关决定维持原行政行为的，作出原行政行为的行政机关和复议机关是共同被告；复议机关改变原行政行为的，复议机关是被告。	재의를 거친 사건은 재의기관이 원래의 행정행위를 유지하도록 결정한 경우 원래의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과 재의기관이 공동 피고이다. 재의기관이 원래의 행정행위를 변경하도록 하는 경우 재의기관이 피고이다.
复议机关在法定期限内未作出复议决定，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起诉原行政行为的，作出原行	재의기관이 법정기한 안에 재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공민·법인·그 밖의 조직은 원래의

政行为的行政机关是被告；起诉复议机关不作为的，复议机关是被告。	행정행위를 기소하는 경우 원래의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피고이다. 재의기관의 부작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재의기관이 피고이다.
两个以上行政机关作出同一行政行为的，共同作出行政行为的行政机关是共同被告。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동일한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공동으로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은 공동 피고이다.
行政机关委托的组织所作的行政行为，委托的行政机关是被告。	행정기관이 위탁한 조직이 한 행정행위는 위탁한 행정기관이 피고이다.
行政机关被撤销或者职权变更的，继续行使其职权的行政机关是被告。	행정기관이 폐지되거나 직권이 변경된 경우 그 직권을 이어받아 행사하는 행정기관이 피고이다.
第二十七条 当事人一方或者双方为二人以上，因同一行政行为发生的行政案件，或者因同类行政行为发生的行政案件、人民法院认为可以合并审理并经当事人同意的，为共同诉讼。	제 27 조 당사자 가운데 하나 또는 쌍방이 2 인 이상인 경우 동일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행정사건 또는 같은 종류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정사건이나 인민법원이 병합 심리가 가능하다고 인지하는 사건은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공동소송으로 한다.
第二十八条 当事人一方人数众多的共同诉讼，可以由当事人推选代表人进行诉讼。代表人的诉讼行为对其所代表的当事人发生效力，但代表人变更、放弃诉讼请求或者承	제 28 조 당사자 일방이 다수인 공동소송은 당사자가 대표자를 선발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대표자의 소송행위는 대표가 속한 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认对方当事人的诉讼请求，应当经被代表的当事人同意。	다만, 대표자가 소송 청구를 변경 또는 포기하거나 상대방이 당사자의 소송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대표를 맡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第二十九条	제 29 조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同被诉行政行为有利害关系但没有提起诉讼，或者同案件处理结果有利害关系的，可以作为第三人申请参加诉讼，或者由人民法院通知参加诉讼。	공민 · 법인 또는 그 밖의 조직이 공동 소송을 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 3 자가 소송 참가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이 제 3 자가 소송 참가를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人民法院判决第三人承担义务或者减损第三人权益的，第三人有权依法提起上诉。	인민법원이 제 3 자가 의무를 지도록 하거나 제 3 자의 권익을 축소하도록 판결하는 경우 제 3 자는 법에 따라 상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第三十条	제 30 조
没有诉讼行为能力的公民，由其法定代理人代为诉讼。法定代理人互相推诿代理责任的，由人民法院指定其中一人代为诉讼。	소송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은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신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그 가운데 하나가 소송을 대신하도록 지정한다.
第三十一条	제 31 조
当事人、法定代理人，可以委托	당사자 · 법정대리인은 한 명 또

一至二人作为诉讼代理人。 下列人员可以被委托为诉讼代理人: (一)律师、基层法律服务工作者; (二)当事人的近亲属或者工作人员; (三)当事人所在社区、单位以及有关社会团体推荐的公民。	는 두 명이 소송대리인이 되도록 위탁할 수 있다. 다음의 인력은 위탁을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1) 변호사·기층 법률서비스 업무자 (2) 당사자의 가까운 친족 또는 업무인력 (3) 당사자 소재 지역사회·사업장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공민
第三十二条 代理诉讼的律师，有权按照规定查阅、复制本案有关材料，有权向有关组织和公民调查，收集与本案有关的证据。对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和个人隐私的材料，应当依照法律规定保密。 当事人和其他诉讼代理人有权按照规定查阅、复制本案庭审材料，但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和个人隐私的内容除外。	제 32 조 대리소송을 하는 변호사는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할 권한을 가지며, 관련 조직과 공민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해당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한다. 국가 기밀·영업 비밀과 개인사생활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에 따라 비밀을 지켜야 한다. 당사자와 그 밖의 소송대리인은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의 법정심문 자료를 열람·복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국가 기밀·영업 비밀과 개인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은 제외한다.
第五章　证据	제 5 장 증거
第三十三条	제 33 조

证据包括: (一) 书证; (二) 物证; (三) 视听资料; (四) 电子数据; (五) 证人证言; (六) 当事人的陈述; (七) 鉴定意见; (八) 勘验笔录、现场笔录。 以上证据经法庭审查属实,才能作为认定案件事实的根据。	증거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서면 자료 (2) 물증 (3) 시청각 자료 (4) 전산 데이터 (5) 증인의 증언 (6) 당사자의 진술 (7) 감정 의견 (8) 감정조사 기록·현장 기록 위의 증거는 법정심사를 거쳐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건 사실 근거로 인정된다.
第三十四条 被告对作出的行政行为负有举证责任,应当提供作出该行政行为的证据和所依据的规范性文件。 被告不提供或者无正当理由逾期提供证据,视为没有相应证据。但是,被诉行政行为涉及第三人合法权益,第三人提供证据的除外。	**제 34 조** 피고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입증하는 책임을 지며, 해당 행정행위의 증거와 근거가 되는 규범성 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가 증거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하지 아니한 이유로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증거가 없다고 간주한다. 다만 피소된 행정행위가 제 3 자의 합법적인 권익과 관련된 경우 제 3 자가 제공하는 증거는 예외로 한다.
第三十五条 在诉讼过程中,被告及其诉讼代理人不得自行向原告、第三人和证人收集证据。	**제 35 조** 소송과정 중에 피고 및 그 소송대리인은 자체적으로 원고·제 3 자·증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

第三十六条 被告在作出行政行为时已经收集了证据，但因不可抗力等正当事由不能提供的，经人民法院准许，可以延期提供。 原告或者第三人提出了其在行政处理程序中没有提出的理由或者证据的，经人民法院准许，被告可以补充证据。	**제 36 조** 피고가 행정행위를 한 때에 이미 증거를 수집하였으나, 불가항력 등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증거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원고 또는 제 3 자가 행정처리 절차 중 제출하지 아니한 사유 또는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피고는 증거를 보충할 수 있다.
第三十七条 原告可以提供证明行政行为违法的证据。原告提供的证据不成立的，不免除被告的举证责任。	**제 37 조** 원고는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원고가 제공하는 증거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의 입증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第三十八条 在起诉被告不履行法定职责的案件中，原告应当提供其向被告提出申请的证据。但有下列情形之一的除外: （一）被告应当依职权主动履行法定职责的; （二）原告因正当理由不能提供	**제 38 조** 피고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소된 사건인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신청을 제기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피고가 직권에 따라 능동적으로 법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2）원고가 정당한 사유로 증

证据的。 在行政赔偿、补偿的案件中，原告应当对行政行为造成的损害提供证据。因被告的原因导致原告无法举证的，由被告承担举证责任。	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배상·행정보상 사건에서 원고는 행정행위를 구성하는 손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원고가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원인이 피고에게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입증에 대한 책임을 진다.
第三十九条 人民法院有权要求当事人提供或者补充证据。	**제 39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출하거나 보충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第四十条 人民法院有权向有关行政机关以及其他组织、公民调取证据。但是，不得为证明行政行为的合法性调取被告作出行政行为时未收集的证据。	**제 40 조** 인민법원은 관련 행정기관과 그 밖의 조직·공민에 대하여 증거를 모으고 확인하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가 행정행위를 한 때에 수집하지 아니한 증거를 모으고 확인하지는 아니한다.
第四十一条 与本案有关的下列证据，原告或者第三人不能自行收集的，可以申请人民法院调取: （一）由国家机关保存而须由人民法院调取的证据；	**제 41 조** 사건과 관련한 아래 증거는 원고 또는 제 3 자가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이 모으고 확인하도록 신청하여야 한다. （1）국가기관이 보존하기 때문에 인민법원이 모아서 확인하여야 하는 증거

（二）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和个人隐私的证据； （三）确因客观原因不能自行收集的其他证据。	(2) 국가 기밀·영업 비밀·개인 사생활과 관련한 증거 (3) 객관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없는 그 밖의 증거
第四十二条 在证据可能灭失或者以后难以取得的情况下，诉讼参加人可以向人民法院申请保全证据，人民法院也可以主动采取保全措施。	제 42 조 증거가 소실될 수 있거나 나중에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 소송참가인은 인민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적극적으로 보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第四十三条 证据应当在法庭上出示，并由当事人互相质证。对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和个人隐私的证据，不得在公开开庭时出示。 人民法院应当按照法定程序，全面、客观地审查核实证据。对未采纳的证据应当在裁判文书中说明理由。 以非法手段取得的证据，不得作为认定案件事实的根据。	제 43 조 증거는 법정에 제시되어야 하며, 당사자가 서로 검증한다. 국가 기밀·영업 비밀·개인 사생활 관련 증거는 공개 법정에서 보여질 수 없다. 인민법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대조하고 심사하여야 한다. 접수하지 아니한 증거에 대하여 재판 문서에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사건 사실 근거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第六章　起诉和受理	제 6 장 기소와 수리
第四十四条	제 44 조

对属于人民法院受案范围的行政案件，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可以先向行政机关申请复议，对复议决定不服的，再向人民法院提起诉讼；也可以直接向人民法院提起诉讼。	인민법원이 접수하는 사건 범위에 속하는 행정사건에 대하여 공민·법원·그 밖의 조직은 행정기관에 우선적으로 재의 신청을 하고 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인민법원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法律、法规规定应当先向行政机关申请复议，对复议决定不服再向人民法院提起诉讼的，依照法律、法规的规定。	법률·법규가 우선 행정기관에 재의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의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第四十五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不服复议决定的，可以在收到复议决定书之日起十五日内向人民法院提起诉讼。复议机关逾期不作决定的，申请人可以在复议期满之日起十五日内向人民法院提起诉讼。法律另有规定的除外。	**제 45 조** 공민·법인 또는 그 밖의 조직이 재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의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기간이 경과하여도 재의기관이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자는 재의기간 만료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第四十六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直接向人民法院提起诉讼的，应当自知道或者应当知道作出行政行为之日起六个月内提出。法律另有规 定的除外。	**제 46 조** 공민·법인 또는 그 밖의 조직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6 개월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因不动产提起诉讼的案件自行政行为作出之日起超过二十年，其他案件自行政行为作出之日起超过五年提起诉讼的，人民法院不予受理。	부동산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행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20 년을 초과하거나 그 밖의 사건의 행정행위를 발령한 날로부터 5 년을 초과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第四十七条	**제 47 조**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申请行政机关履行保护其人身权、财产权等合法权益的法定职责，行政机关在接到申请之日起两个月内不履行的，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法律、法规对行政机关履行职责的期限另有规定的，从其规定。	공민·법인 또는 그 밖의 조직이 행정기관에서 인신권·재산권 등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법정 직책을 이행하도록 신청하였으나 행정기관이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 개월 안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민·법인 또는 그 밖의 조직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률·법규가 행정기관이 직책을 이행하는 기한에 대해 별도 규정하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在紧急情况下请求行政机关履行保护其人身权、财产权等合法权益的法定职责，行政机关不履行的，提起诉讼不受前款规定期限的限制。	공민·법인 또는 그 밖의 조직이 긴급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그 인신권·재산권 등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법정직책을 이행하도록 청구하였으나 행정기관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 제기는 앞 관의 규정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第四十八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因不可抗力或者其他不属于其自身的原因耽误起诉期限的，被耽误的时间不计算在起诉期限内。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因前款规定以外的其他特殊情况耽误起诉期限的，在障碍消除后十日内，可以申请延长期限，是否准许由人民法院决定。	제 48 조 공민 · 법인 또는 그 밖의 조직이 불가항력 또는 그 밖의 자체적인 원인에 속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지체하여 제소기한을 놓친 경우 지체하여 놓친 시간은 제소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민 · 법인 또는 그 밖의 조직이 앞 관의 규정 외에 그 밖의 특수 상황으로 지체하여 제소기한을 놓친 경우 장해를 제거한 후 10일 안에 기한 연장을 신청 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第四十九条 提起诉讼应当符合下列条件: (一) 原告是符合本法第二十五条规定的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 (二) 有明确的被告; (三) 有具体的诉讼请求和事实根据; (四) 属于人民法院受案范围和受诉人民法院管辖。	제 49 조 소송의 제기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부합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법 제 25 조에서 규정하는 공민 · 법인 또는 그 밖의 조직에 부합된다. (2) 명확한 피고가 있어야 한다. (3) 구체적인 소송 청구와 사실 근거가 있어야 한다. (4) 인민법원의 접수 범위에 포함되고 해당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하여야 한다.
第五十条 起诉应当向人民法院递交起诉状，并按照被告人数提出副本。	제 50 조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피고인

	인원수에 따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书写起诉状确有困难的，可以口头起诉，由人民法院记入笔录，出具注明日期的书面凭证，并告知对方当事人。	서면 소장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구두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기록하고 날짜를 명기한 서면증빙을 발급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린다.
第五十一条 人民法院在接到起诉状时对符合本法规定的起诉条件的，应当登记立案。	제 51 조 인민법원이 소장 접수 시 본 법 규정의 소송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등기 접수하여야 한다.
对当场不能判定是否符合本法规定的起诉条件的，应当接收起诉状，出具注明收到日期的书面凭证，并在七日内决定是否立案。不符合起诉条件的，作出不予立案的裁定。裁定书应当载明不予立案的理由。原告对裁定不服的，可以提起上诉。	현장에서 본 법 규정의 소송 조건에 부합되는지를 판단 할 수 없는 경우 소장을 접수한 후 접수날짜를 명기한 서면증빙을 발급하고 7 일내 접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소송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접수 불허 재정을 한다. 재정서는 접수 불허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원고는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 상소를 제기 할 수 있다.
起诉状内容欠缺或者有其他错误的，应当给予指导和释明，并一次性告知当事人需要补正的内容。不得未经指导和释明即以起诉不符合条件为由不接收起诉状。	소장 내용이 결여 또는 기타 오류가 있는 경우 지도 및 해석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보정하여야 할 내용을 한꺼번에 알려주어야 한다. 지도 및 해석하지 않고 즉시 소장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 접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对于不接收起诉状、接收起诉状后不出具书面凭证，以及不一次性告知当事人需要补正的起诉状内容的，当事人可以向上级人民法院投诉，上级人民法院应当责令改正，并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소장을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소장 접수 후 서면증빙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보정하여야 하는 소장 내용을 한꺼번에 알려주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는 상급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상급 인민법원은 개정하도록 명령하여야 하고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담당자와 그 밖의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려야 한다.
第五十二条 人民法院既不立案，又不作出不予立案裁定的，当事人可以向上一级人民法院起诉。上一级人民法院认为符合起诉条件的，应当立案、审理，也可以指定其他下级人民法院立案、审理。	**제 52 조**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아니하고 접수 불허 재정도 내리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는 한급 위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한급 위의 인민법원이 소송 조건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수하여 심리하거나, 기타 하급 인민법원을 지정하여 접수·심리하게 할 수 있다.
第五十三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认为行政行为所依据的国务院部门和地方人民政府及其部门制定的规范性文件不合法，在对行政行为提起诉讼时，可以一并请求对该规范性文件进行审查。	**제 53 조** 공민·법인·그 밖의 조직의 행정행위가 근거로 한 국무원 부서와 지방 인민정부 및 그 부서가 제정한 규범성 문건이 합법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 제기 시 동일한 규범성 문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前款规定的规范性文件不含规章。	앞 관의 규범성 문건에 규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第七章　审理和判决	**제 7 장 심리와 판결**
第一节　一般规定	**제 1 절 일반 규정**
第五十四条 人民法院公开审理行政案件，但涉及国家秘密、个人隐私和法律另有规定的除外。 涉及商业秘密的案件，当事人申请不公开审理的，可以不公开审理。	**제 54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공개심리한다. 다만, 국가 기밀·개인 사생활과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영업 비밀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비공개 심리를 신청하면 비공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第五十五条 当事人认为审判人员与本案有利害关系或者有其他关系可能影响公正审判，有权申请审判人员回避。 审判人员认为自己与本案有利害关系或者有其他关系，应当申请回避。 前两款规定，适用于书记员、翻译人员、鉴定人、勘验人。	**제 55 조** 재판관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혹은 그 밖의 관계로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당사자가 인지하는 경우 그는 재판관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재판관 본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존재하거나 혹은 그 밖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지하는 경우 반드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위의 두 관의 규정은 기록원, 번역원, 감정원, 검험원에게도 적용된다.

院长担任审判长时的回避，由审判委员会决定；审判人员的回避，由院长决定；其他人员的回避，由审判长决定。当事人对决定不服的，可以申请复议一次。	법원장이 재판장을 담당할 때의 회피는 재판위원회가 결정하고, 재판위원의 회피는 법원장이 결정하며, 그 밖의 인원의 회피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당사자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의 신청을 1 회 할 수 있다.
第五十六条 诉讼期间，不停止行政行为的执行。但有下列情形之一的，裁定停止执行: （一）被告认为需要停止执行的; （二）原告或者利害关系人申请停止执行，人民法院认为该行政行为的执行会造成难以弥补的损失，并且停止执行不损害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的; （三）人民法院认为该行政行为的执行会给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造成重大损害的; （四）法律、法规规定停止执行的。 当事人对停止执行或者不停止执行的裁定不服的，可以申请复议一次。	**제 56 조** 소송기간에는 행정행위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집행을 정지하도록 재정한다: (1) 피고가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경우 (2) 원고 또는 이해관계자가 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해당 행정행위의 집행이 보전할 수 없는 손실을 조성하며, 집행을 정지하면 국가이익 · 사회공공이익에 영향주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인민법원이 해당 행정행위의 집행이 국가이익 · 사회공공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4) 법률 · 법규가 집행 정지를 규정하는 경우 당사자가 집행 정지 또는 집행 미정지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의 신청을 1 회 할 수 있다.

第五十七条 人民法院对起诉行政机关没有依法支付抚恤金、最低生活保障金和工伤、医疗社会保险金的案件，权利义务关系明确、不先予执行将严重影响原告生活的，可以根据原告的申请，裁定先予执行。	제 57 조 인민법원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로금·최저생활보장금과 산업재해·의료사회보험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고 우선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하면 원고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우 원고의 신청에 근거하여 우선 집행하도록 재정할 수 있다.
当事人对先予执行裁定不服的，可以申请复议一次。复议期间不停止裁定的执行。	당사자가 우선 집행하는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의 신청을 1 회 할 수 있다. 재의기간에는 재정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第五十八条 经人民法院传票传唤，原告无正当理由拒不到庭，或者未经法庭许可中途退庭的，可以按照撤诉处理；被告无正当理由拒不到庭，或者未经法庭许可中途退庭的，可以缺席判决。	제 58 조 인민법원이 소환하였는데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을 거부하거나 법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 퇴정하는 경우 소송 취하에 근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을 거부하거나 법정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도 퇴정하는 경우 궐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第五十九条 诉讼参与人或者其他人有下列行为之一的，人民法院可以根据情节轻重，予以训诫、责令具结悔过或者处一万元以下的罚款、十	제 59 조 소송참가인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아래 행위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황의 경중에 따라 훈계하거나 반성 서약서를

五日以下的拘留；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제출하도록 하거나 1 만 위안 이하의 벌금 또는 15 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一）有义务协助调查、执行的人，对人民法院的协助调查决定、协助执行通知书，无故推拖、拒绝或者妨碍调查、执行的；	(1) 조사·집행을 협조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인민법원의 조사 협조 결정·협조 집행 통지서에 대해 이유없이 회피·거부하거나 조사·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二）伪造、隐藏、毁灭证据或者提供虚假证明材料，妨碍人民法院审理案件的；	(2) 증거를 위조·은닉·훼손하거나 허위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인민법원의 사건 심리를 방해하는 경우
（三）指使、贿买、胁迫他人作伪证或者威胁、阻止证人作证的；	(3) 타인을 지시·매수·협박하여 위증하도록 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협박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四）隐藏、转移、变卖、毁损已被查封、扣押、冻结的财产的；	(4) 이미 차압·압류·동결한 재산을 은닉·이전·환금 판매·훼손하는 경우
（五）以欺骗、胁迫等非法手段使原告撤诉的；	(5) 기만·협박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도록 하는 경우
（六）以暴力、威胁或者其他方法阻碍人民法院工作人员执行职务，或者以哄闹、冲击法庭等方法扰乱人民法院工作秩序的；	(6) 폭력·위협·그 밖의 방법으로 인민법원 업무자가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충격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인민법원 업무 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七）对人民法院审判人员或者其他工作人员、诉讼参与人、	(7) 인민법원 재판관 또는 그 밖의 업무자·소송참가인·조사

协助调查和执行的人员恐吓、侮辱、诽谤、诬陷、殴打、围攻或者打击报复的。	협조와 집행을 하는 자에게 공갈·모욕·비방·모함·구타·포위·공격 및 복수하는 경우
人民法院对有前款规定的行为之一的单位，可以对其主要负责人或者直接责任人员依照前款规定予以罚款、拘留；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인민법원은 앞 관에서 규정하는 행위 가운데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 또는 직접적인 책임자에게 앞 관의 규정에 따라 벌금·구류를 집행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罚款、拘留须经人民法院院长批准。当事人不服的，可以向上一级人民法院申请复议一次。复议期间不停止执行。	벌금·구류는 반드시 인민법원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한 급 위의 인민법원에 재의 신청을 1 회 할 수 있다. 재의 기간에는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第六十条	제 60 조
人民法院审理行政案件，不适用调解。但是，行政赔偿、补偿以及行政机关行使法律、法规规定的自由裁量权的案件可以调解。 调解应当遵循自愿、合法原则，不得损害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和他人合法权益。	인민법원의 행정사건 심리에는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 배상·행정 보상·행정기관이 행사하는 법률 및 법규 규정의 자유재량권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정은 자발성·준법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가 이익·사회공공이익·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실을 입혀서는 아니 된다.
第六十一条	제 61 조

在涉及行政许可、登记、征收、征用和行政机关对民事争议所作的裁决的行政诉讼中，当事人申请一并解决相关民事争议的，人民法院可以一并审理。	행정허가 · 등기 · 징수 · 징용 · 행정기관이 민사분쟁에 대해 내린 재결에 관한 행정소송 중 당사자가 관련 민사분쟁을 같이 해결하도록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같이 심리할 수 있다.
在行政诉讼中，人民法院认为行政案件的审理需以民事诉讼的裁判为依据的，可以裁定中止行政诉讼。	행정소송 중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의 심리가 민사소송 재판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고 인지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중지하도록 재정할 수 있다.
第六十二条	제 62 조
人民法院对行政案件宣告判决或者裁定前，原告申请撤诉的，或者被告改变其所作的行政行为，原告同意并申请撤诉的，是否准许，由人民法院裁定。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에 대해서 판결 선고 혹은 재정하기 이전에 원고는 취소 신청할 수 있다. 혹은 피고가 원래의 행정행위를 변경하여 원고가 취소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비준 ·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서 재정한다.
第六十三条	제 63 조
人民法院审理行政案件，以法律和行政法规、地方性法规为依据。地方性法规适用于本行政区域内发生的行政案件。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사할 때 법률 · 행정 법규 · 지방성 법규를 근거로 한다. 지방성 법규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한 행정사건에 적용된다.
人民法院审理民族自治地方的行政案件，并以该民族自治地方的自治条例和单行条例为依据。	인민법원이 민족자치지방의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해당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와 단행 조례도 근거로 삼는다.
人民法院审理行政案件，参照规	인민법원이 심리하는 행정사건은

章。	규장을 참고한다.
第六十四条 人民法院在审理行政案件中，经审查认为本法第五十三条规定的规范性文件不合法的，不作为认定行政行为合法的依据，并向制定机关提出处理建议。	**제 64 조** 인민법원이 행정사건 심리 중에 심사를 통하여 이 법 제 53 조가 규정하는 규범성 문건이 법률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지하는 경우 행정행위를 인정하는 합법적인 근거로 삼지 아니하고 해당 규범성 문건을 제정한 기관에 처리의견을 제출한다.
第六十五条 人民法院应当公开发生法律效力的判决书、裁定书，供公众查阅，但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和个人隐私的内容除外。	**제 65 조** 인민법원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서 · 재정서를 공개하여 대중이 열람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기밀 · 영업 비밀 · 개인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은 제외한다.
第六十六条 人民法院在审理行政案件中，认为行政机关的主管人员、直接责任人员违法违纪的，应当将有关材料移送监察机关、该行政机关或者其上一级行政机关；认为有犯罪行为的，应当将有关材料移送公安、检察机关。	**제 66 조** 인민법원이 행정사건 심리 중에 행정기관 주무인력 · 직접 책임자가 법 및 기율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감찰기관 · 해당 행정기관 또는 한 급 위의 행정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범죄행위가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공안 · 감찰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人民法院对被告经传票传唤无正当理由拒不到庭，或者未经法庭	인민법원이 피고에게 소환장을 소환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

许可中途退庭的，可以将被告拒不到庭或者中途退庭的情况予以公告，并可以向监察机关或者被告的上一级行政机关提出依法给予其主要负责人或者直接责任人员处分的司法建议。	정을 거부하거나 법정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퇴정한 경우, 피고가 출정 거부 또는 중도 퇴정한 상황을 공고하거나 감찰기관 또는 피고의 한 급 위의 행정기관에 법에 따라 주요 책임자 또는 직접 책임자에게 처분을 내리도록 사법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第二节　第一审普通程序	**제 2 절 제 1 심 일반 절차**
第六十七条 人民法院应当在立案之日起五日内，将起诉状副本发送被告。被告应当在收到起诉状副本之日起十五日内向人民法院提交作出行政行为的证据和所依据的规范性文件，并提出答辩状。人民法院应当在收到答辩状之日起五日内，将答辩状副本发送原告。 被告不提出答辩状的，不影响人民法院审理。	**제 67 조** 인민법원은 접수일로부터 5 일 내에 소송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피고는 소송 부본을 받은 날부터 15 일내 인민법원에게 행정행위를 발령한 증거와 근거가 되는 규범성 문건을 제출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답변서를 받은 날부터 5 일 내에 답변서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第六十八条 人民法院审理行政案件，由审判员组成合议庭，或者由审判员、陪审员组成合议庭。合议庭的成员，应当是三人以上的单数。	**제 68 조**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할 때 합의법정은 재판원으로 구성하거나, 재판원 · 배심원으로 구성한다. 합의법정의 구성원은 반드

	시 3 인 이상의 홀수여야 한다.
第六十九条 行政行为证据确凿，适用法律、法规正确，符合法定程序的，或者原告申请被告履行法定职责或者给付义务理由不成立的，人民法院判决驳回原告的诉讼请求。	제 69 조 행정행위 증거가 확실하고 적용한 법률·법규가 정확하며 법정절차에 부합되거나, 피고가 법정직무 및 책임 또는 지급 의무를 이행함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第七十条 行政行为有下列情形之一的，人民法院判决撤销或者部分撤销，并可以判决被告重新作出行政行为: (一) 主要证据不足的; (二) 适用法律、法规错误的; (三) 违反法定程序的; (四) 超越职权的; (五) 滥用职权的; (六) 明显不当的。	제 70 조 행정행위가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취소 또는 일부 취소하도록 판결하고 피고가 행정행위를 다시 하도록 판결 할 수 있다: (1) 주요 증거가 부족한 경우 (2) 적용한 법률, 법규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법정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직권을 초월한 경우 (5) 직권을 남용한 경우 (6) 명백히 부당한 경우
第七十一条 人民法院判决被告重新作出行政行为的，被告不得以同一的事实和理由作出与原行政行为基本相同的行政行为。	제 71 조 인민법원에서 피고에게 새로운 행정행위를 하는 판결을 내렸을 때 피고는 동일한 사실과 이유로 원 행정행위와 비슷한 행정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第七十二条 人民法院经过审理，查明被告不履行法定职责的，判决被告在一定期限内履行。	**제 72 조** 인민법원 심리를 거쳐 피고가 법정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밝혀지는 경우 피고가 일정한 기한 안에 이행하도록 판결 할 수 있다.
第七十三条 人民法院经过审理，查明被告依法负有给付义务的，判决被告履行给付义务。	**제 73 조** 인민법원이 심리를 거쳐 피고가 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조사된 경우 피고가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판결한다.
第七十四条 行政行为有下列情形之一的，人民法院判决确认违法，但不撤销行政行为: （一）行政行为依法应当撤销，但撤销会给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造成重大损害的; （二）行政行为程序轻微违法，但对原告权利不产生实际影响的。 行政行为有下列情形之一，不需要撤销或者判决履行的，人民法院判决确认违法:	**제 74 조** 행정행위가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위법 확인을 판결한다. 다만, 행정행위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1) 법에 따라 행정행위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취소하는 것이 국가이익·사회공공이익에 현저한 손해를 조성하게 되는 경우 (2) 행정행위 절차가 경미하게 위법하지만, 원고 권리에 대해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행위가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며 취소 할 필요가 없거나 이행 할 것을 판결한 경우 인민법원은 위법 확인을 판결한다:

（一）行政行为违法，但不具有可撤销内容的；	(1) 행정행위가 위법적이지만, 취소 가능한 내용을 구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二）被告改变原违法行政行为，原告仍要求确认原行政行为违法的；	(2) 피고가 원 위법 행정행위를 변경하고, 원고가 여전히 원 행정행위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三）被告不履行或者拖延履行法定职责，判决履行没有意义的。	(3) 피고가 법정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연기하였으나, 이행 판결에는 이의가 없는 경우
第七十五条 行政行为有实施主体不具有行政主体资格或者没有依据等重大且明显违法情形，原告申请确认行政行为无效的，人民法院判决确认无效。	**제 75 조** 행정행위 실시주체가 행정주체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등 심각하고 명확한 위법 상황이 발생했으며 원고가 행정행위 무효 확인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무효 확인을 판결한다.
第七十六条 人民法院判决确认违法或者无效的，可以同时判决责令被告采取补救措施；给原告造成损失的，依法判决被告承担赔偿责任。	**제 76 조** 인민법원이 위법 또는 무효 확인한 경우 동시에 피고가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명을 내려 판결 할 수 있다. 원고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법에 따라 피고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판결한다.
第七十七条 行政处罚明显不当，或者其他行政行为涉及对款额的确定、认定	**제 77 조** 행정처벌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그 밖의 행정행위가 관련된 금액

确有错误的，人民法院可以判决变更。 人民法院判决变更，不得加重原告的义务或者减损原告的权益。但利害关系人同为原告，且诉讼请求相反的除外。	의 확정·인정이 확실하게 오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변경판결을 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변경판결은 원고의 의무를 가중시키거나 원고의 권익을 감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모두 원고이고 소송청구가 반대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第七十八条 被告不依法履行、未按照约定履行或者违法变更、解除本法第十二条第一款第十一项规定的协议的，人民法院判决被告承担继续履行、采取补救措施或者赔偿损失等责任。 被告变更、解除本法第十二条第一款第十一项规定的协议合法，但未依法给予补偿的，人民法院判决给予补偿。	제 78 조 피고가 법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약정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제 12 조 제 1 관 제 11 항 규정의 계약을 위법하게 변경, 해제한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가 계속 이행, 보완조치 실시 또는 손실배상 등 책임을 지도록 판결한다. 피고가 이 법 제 12 조 제 1 관 제 11 항 규정의 협의를 변경·해제하는 것이 합법적이지만 법에 따라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상하도록 판결한다.
第七十九条 复议机关与作出原行政行为的行政机关为共同被告的案件，人民法院应当对复议决定和原行政行为一并作出裁判。	제 79 조 재의기관과 원 행정행위를 내린 행정기관이 공동 피고가 된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재의결정과 원 행정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판결을 하여야 한다.

第八十条 人民法院对公开审理和不公开审理的案件，一律公开宣告判决。 当庭宣判的，应当在十日内发送判决书；定期宣判的，宣判后立即发给判决书。 宣告判决时，必须告知当事人上诉权利、上诉期限和上诉的人民法院。	제 80 조 인민법원은 공개 심리와 비공개 심리한 사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결을 공개 선고한다.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10 일 안에 판결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정기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선고 후 즉시 판결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시 반드시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 할 권리, 상소 기한 및 상소하는 인민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第八十一条 人民法院应当在立案之日起六个月内作出第一审判决。有特殊情况需要延长的，由高级人民法院批准，高级人民法院审理第一审案件需要延长的，由最高人民法院批准。	제 81 조 인민법원은 접수일로부터 6 개월 안에 제 1 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고급인민법원에서 비준하며, 고급인민법원이 제 1 심 사건 심리시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에서 비준한다.
第三节　简易程序	제 3 절 간이절차
第八十二条 人民法院审理下列第一审行政案件，认为事实清楚、权利义务关系明确、争议不大的，可以适用简易程序:	제 82 조 인민법원이 심리한 아래 제 1 심 행정사건이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며 분쟁이 크지 아니한 경우 간이 절차를

（一）被诉行政行为是依法当场作出的； （二）案件涉及款额二千元以下的； （三）属于政府信息公开案件的。 除前款规定以外的第一审行政案件，当事人各方同意适用简易程序的，可以适用简易程序。 发回重审、按照审判监督程序再审的案件不适用简易程序。	적용할 수 있다: (1) 소송이 제기된 행정행위가 법에 따라 현장에서 집행한 경우 (2) 사건 관련된 금액이 2000 위안 이하인 경우 (3) 행정 정보 공개 사건에 속하는 경우 앞 관의 규정 외에 제1심 행정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양쪽 모두 간이 절차 적용에 동의하는 경우 간이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파기 환송·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하는 사건은 간이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八十三条 适用简易程序审理的行政案件，由审判员一人独任审理，并应当在立案之日起四十五日内审结。	제 83 조 간이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행정사건은 재판원 한 사람이 심리를 단독 담당하며, 접수일로부터 45 일 안에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하여야 한다.
第八十四条 人民法院在审理过程中，发现案件不宜适用简易程序的，裁定转为普通程序。	제 84 조 인민법원 심리 과정 중 사건이 간이 절차 적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 절차로 변경하도록 재정한다.
第四节　第二审程序	제 4 절 제 2 심 절차
第八十五条	제 85 조

当事人不服人民法院第一审判决的，有权在判决书送达之日起十五日内向上一级人民法院提起上诉。当事人不服人民法院第一审裁定的，有权在裁定书送达之日起十日内向上一级人民法院提起上诉。逾期不提起上诉的，人民法院的第一审判决或者裁定发生法律效力。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정서가 송달된 날부터 15 일 안에 상급 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제 1 심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정서가 송달될 날부터 10 일 안에 상급 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 기한이 지나도록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이나 재정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第八十六条 人民法院对上诉案件，应当组成合议庭，开庭审理。经过阅卷、调查和询问当事人，对没有提出新的事实、证据或者理由，合议庭认为不需要开庭审理的，也可以不开庭审理。	**제 86 조** 인민법원은 소송사건에 대해 합의법정을 구성하여 개정 심리하여야 한다. 채점·조사와 당사자 설문을 거쳐 새로운 사실·증거 또는 이유를 제출하지 않은데 대하여 합의법정이 개정 심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심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第八十七条 人民法院审理上诉案件，应当对原审人民法院的判决、裁定和被诉行政行为进行全面审查。	**제 87 조** 인민법원은 상소된 사건을 심리 시, 원심 인민법원의 판결·재정과 기소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第八十八条 人民法院审理上诉案件，应当在收到上诉状之日起三个月内作出	**제 88 조** 인민법원이 심리하는 소송사건은 소장을 접수한 날부터 3 개월 안

终审判决。有特殊情况需要延长的，由高级人民法院批准，高级人民法院审理上诉案件需要延长的，由最高人民法院批准。	에 종심 판결이 되어야 한다. 특수 상황이 있어서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고급 인민법원이 비준하며, 고급 인민법원이 소송사건 심리를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이 비준한다.
第八十九条 人民法院审理上诉案件，按照下列情形，分别处理:	제 89 조 인민법원이 심리하는 상소된 사건은 아래 상황에 따라 각각 처리한다:
(一) 原判决、裁定认定事实清楚，适用法律、法规正确的，判决或者裁定驳回上诉，维持原判决、裁定；	(1) 원판결, 재정에서 인정 사실이 명확하고 적용하는 법률·법규가 정확한 경우, 소송 기각을 판결 또는 재정하며 원판결 및 재정을 유지한다.
(二) 原判决、裁定认定事实错误或者适用法律、法规错误的，依法改判、撤销或者变更；	(2) 원판결, 재정 인정 사실에 오류가 있거나 적용한 법률, 법규가 잘못된 경우 법에 따라 판정을 번복하거나 취소 또는 변경한다.
(三) 原判决认定基本事实不清、证据不足的，发回原审人民法院重审，或者查清事实后改判；	(3) 원판결 인정 기본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원심 인민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하거나, 사실을 명확히 조사한 후 판결을 정정한다.
(四) 原判决遗漏当事人或者违法缺席判决等严重违反法定程序的，裁定撤销原判决，发回原审人民法院重审。	(4) 원판결에서 당사자를 누락하거나 위법하게 결석 판결을 하는 등 엄중하게 법정절차를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취소하도록 재정하고 원심 인민법원

	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한다.
原审人民法院对发回重审的案件作出判决后，当事人提起上诉的，第二审人民法院不得再次发回重审。	원심 인민법원이 환송하여 재의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2심 인민법원은 재차 환송 재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人民法院审理上诉案件，需要改变原审判决的，应当同时对被诉行政行为作出判决。	인민법원이 심리하는 소송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동시에 기소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第五节　审判监督程序	**제 5 절 재판 감독 절차**
第九十条 当事人对已经发生法律效力的判决、裁定，认为确有错误的，可以向上一级人民法院申请再审，但判决、裁定不停止执行。	**제 90 조**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을 발생한 판결·재정에 오류가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 한 급 위의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판결·재정은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第九十一条 当事人的申请符合下列情形之一的，人民法院应当再审:	**제 91 조** 당사자의 신청이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하여야 한다:
（一）不予立案或者驳回起诉确有错误的; （二）有新的证据，足以推翻原判决、裁定的; （三）原判决、裁定认定事实的主要证据不足、未经质证或者	(1) 접수 불허 또는 소송 기각에 확실히 오류가 있는 경우 (2) 원판결·재정을 전복시킬만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3) 원판결·재정이 사실의 주요 증거가 부족·미검증 또는

系伪造的;	위조에 속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四) 原判决、裁定适用法律、法规确有错误的;	(4) 원판결·재정이 적용하는 법률·법규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五) 违反法律规定的诉讼程序，可能影响公正审判的;	(5) 법률이 규정하는 소송절차를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六) 原判决、裁定遗漏诉讼请求的;	(6) 원판결·재정이 소송 청구를 누락하는 경우
(七) 据以作出原判决、裁定的法律文书被撤销或者变更的;	(7) 원판결·재정을 내리는데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八) 审判人员在审理该案件时有贪污受贿、徇私舞弊、枉法裁判行为的。	(8) 재판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때에 횡령수뢰·사욕추구 불법행위·비리에 얽힌 판결행위가 있는 경우
第九十二条	**제 92 조**
各级人民法院院长对本院已经发生法律效力的判决、裁定，发现有本法第九十一条规定情形之一，或者发现调解违反自愿原则或者调解书内容违法，认为需要再审的，应当提交审判委员会讨论决定。	각급 인민법원장은 해당 법원의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재정에 대하여 이 법 제 91 조 규정 상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함을 발견하는 경우 또는 조정이 자발성 원칙을 위반하거나 조정서의 내용이 위법임을 발견하여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지되는 경우 재판위원회에 토론 결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最高人民法院对地方各级人民法院已经发生法律效力的判决、裁定，上级人民法院对下级人民法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재정, 상급인민법원은 하급

院已经发生法律效力的判决、裁定，发现有本法第九十一条规定情形之一，或者发现调解违反自愿原则或者调解书内容违法的，有权提审或者指令下级人民法院再审。	인민법원의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재정에 대하여 이 법 제 91 조에서 규정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함을 발견하는 경우, 또는 조정이 자발성 원칙을 위반하거나 조정서의 내용이 위법임을 발견하는 경우 심리를 제기하거나 하급인민법원이 재심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다.
第九十三条	제 93 조
最高人民检察院对各级人民法院已经发生法律效力的判决、裁定，上级人民检察院对下级人民法院已经发生法律效力的判决、裁定，发现有本法第九十一条规定情形之一，或者发现调解书损害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的，应当提出抗诉。	최고 인민검찰원은 각급 인민법원이 내린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재정과 상급 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법원이 내린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재정에 대하여 해당 법 제 91 조가 규정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조정서가 국가이익·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항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检察院对同级人民法院已经发生法律效力的判决、裁定，发现有本法第九十一条规定情形之一，或者发现调解书损害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的，可以向同级人民法院提出检察建议，并报上级人民检察院备案；也可以提请上级人民检察院向同级人民法院提出抗诉。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 인민법원이 내린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재정이 이 법 제 91 조가 규정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이익·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 의견을 제출하고 상급 인민검찰원에 등록 보고하거나, 상급 인민검찰원이 동급

各级人民检察院对审判监督程序以外的其他审判程序中审判人员的违法行为，有权向同级人民法院提出检察建议。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도록 제청할 수 있다. 각급 인민검찰원은 심판감독절차 외의 다른 심판절차 중에 재판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第八章　执行	**제 8 장 집행**
第九十四条 当事人必须履行人民法院发生法律效力的判决、裁定、调解书。	**제 94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발효한 판결서 · 재정서 · 조정서를 이행하여야 한다.
第九十五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拒绝履行判决、裁定、调解书的，行政机关或者第三人可以向第一审人民法院申请强制执行，或者由行政机关依法强制执行。	**제 95 조** 공민 · 법인 · 그 밖의 조직이 판결서 · 재정서 · 조정서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행정기관 또는 제 3 자가 제 1 심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 강제집행을 직접 할 수도 있다.
第九十六条 行政机关拒绝履行判决、裁定、调解书的，第一审人民法院可以采取下列措施: (一) 对应当归还的罚款或者应当给付的款额，通知银行从该行政机关的账户内划拨;	**제 96 조** 행정기관이 판결서 · 재정서 · 조정서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제 1 심 인민법원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반환하여야 하는 벌금 또는 납부액은 은행에 통지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계좌로부터

	대체한다.
(二）在规定期限内不履行的，从期满之日起，对该行政机关负责人按日处五十元至一百元的罚款；	(2) 규정된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한이 초과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책임자에게 1일당 50위안에서 1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三）将行政机关拒绝履行的情况予以公告；	(3) 행정기관이 이행을 거부하는 상황을 공고한다.
(四）向监察机关或者该行政机关的上一级行政机关提出司法建议。接受司法建议的机关，根据有关规定进行处理，并将处理情况告知人民法院；	(4) 감찰기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보다 한 급 위의 행정기관에 사법 건의를 제기한다. 사법 건의를 접수한 기관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처리 상황을 인민법원에 고지한다.
(五）拒不履行判决、裁定、调解书，社会影响恶劣的，可以对该行政机关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予以拘留；情节严重，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5) 판결서·재정서·조정서의 이행을 거부하여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주요 책임자와 그 밖의 직접적인 책임자를 구류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第九十七条	제 97 조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对行政行为在法定期限内不提起诉讼又不履行的，行政机关可以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或者依法强制执行。	공민·법인·그 밖의 조직이 행정행위에 대한 법정 기한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도 아니하고 이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직접 할 수 있다.

第九章　涉外行政诉讼	제 9 장 해외행정소송
第九十八条 外国人、无国籍人、外国组织在中华人民共和国进行行政诉讼，适用本法。法律另有规定的除外。	**제 98 조** 외국인·무국적자·외국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하는 행정소송에 이 법을 적용한다. 법률에 달리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
第九十九条 外国人、无国籍人、外国组织在中华人民共和国进行行政诉讼，同中华人民共和国公民、组织有同等的诉讼权利和义务。 外国法院对中华人民共和国公民、组织的行政诉讼权利加以限制的，人民法院对该国公民、组织的行政诉讼权利，实行对等原则。	**제 99 조** 외국인·무국적자·외국조직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하는 행정소송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조직과 동등한 소송 권리 및 의무가 있다. 외국 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조직의 행정소송 권리에 제한을 두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국가의 공민·조직의 행정소송 권리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第一百条 外国人、无国籍人、外国组织在中华人民共和国进行行政诉讼，委托律师代理诉讼的，应当委托中华人民共和国律师机构的律师。	**제 100 조** 외국인·무국적자·외국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하는 행정소송을 변호사에게 위탁하여 소송을 대리시키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기구의 변호사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第十章　附则	제 10 장
第一百零一条 人民法院审理行政案件，关于期间、送达、财产保全、开庭审理、调解、中止诉讼、终结诉讼、简易程序、执行等，以及人民检察院对行政案件受理、审理、裁判、执行的监督，本法没有规定的，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相关规定。	제 101 조 인민법원이 심리하는 행정사건은 기간·송달·재산 보전·개정 심리·조정·소송 중지·소송 종결·간이 절차·집행 등과 인민검찰원의 행정사건 접수·심리·재판·집행에 대한 감독에 관한 것이며,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것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第一百零二条 人民法院审理行政案件，应当收取诉讼费用。诉讼费用由败诉方承担，双方都有责任的由双方分担。收取诉讼费用的具体办法另行规定。	제 102 조 인민법원이 심리하는 행정사건은 소송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고, 양쪽 모두 책임이 있는 경우 양쪽이 나누어 부담한다. 소송비용 납부의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第一百零三条 本法自 1990 年 10 月 1 日起施行。	제 103 조 이 법은 1990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